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-9호

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에 대한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3년 3월 20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편취급국의 우편창구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

대 상 업 무 (유료우편물에 한함)	위탁 수수료
1. 국내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	월1통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
가. 국내등기통상우편물 (요금별후납 및 수취인부담후납부담 포함)	각 통수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500,000원 지급
1) 월 접수 1통부터 5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77 상당액
2) 월 접수 501통부터 1,5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2 상당액
3) 월 접수 1,501통부터 2,5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35 상당액
4) 월 접수 2,501통부터 3,5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4 상당액
5) 월 접수 3,501통부터 5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4 상당액
6) 월 접수 5,001통부터 7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9 상당액
7) 월 접수 7,001통부터 10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
8) 월 접수 10,001통 이상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.5 상당액
나. 국내등기소포우편물	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100,000원 지급
1) 월 접수요금 500만원까지	즉납요금의 100분의 17 상당액
2) 월 접수요금 1,000만원까지	즉납요금의 100분의 15 상당액
3) 월 접수요금 2,000만원까지	즉납요금의 100분의 13 상당액
4) 월 접수요금 3,000만원까지	즉납요금의 100분의 5 상당액
5) 월 접수요금 3,000만원초과	즉납요금의 100분의 0.5 상당액
다. 우체국쇼핑접수	
1) 월 소포요금 1,000만원까지	소포요금의 100분의 10 상당액
2) 월 소포요금 3,000만원까지	소포요금의 100분의 8 상당액
3) 월 소포요금 5,000만원까지	소포요금의 100분의 5 상당액
4) 월 소포요금 5,000만원초과	소포요금의 100분의 0.5 상당액
라. 내용증명수수료	부가취급수수료의 100분의 8 상당액

대 상 업 무 (유료우편물에 한함)	위탁 수수료
2. 국제특수취급우편물 접수(즉납, 별납 및 후납)	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
가. 국제등기통상	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10,000원 지급
1) 월 접수요금 500만원까지	접수요금의 100분의 10 상당액
2) 월 접수요금 1,000만원까지	접수요금의 100분의 8 상당액
3) 월 접수요금 2,000만원까지	접수요금의 100분의 5 상당액
4) 월 접수요금 2,000만원초과	접수요금의 100분의 0.5 상당액
나. 국제소포	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5,000원 지급
1) 월 접수요금 100만원까지	접수요금의 100분의 10 상당액
2) 월 접수요금 300만원까지	접수요금의 100분의 8 상당액
3) 월 접수요금 500만원까지	접수요금의 100분의 5 상당액
4) 월 접수요금 500만원초과	접수요금의 100분의 0.5 상당액
다. 국제특급(EMS)	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10,000원 지급
1) 월 접수요금 500만원까지	접수요금의 100분의 15 상당액
2) 월 접수요금 1,000만원까지	접수요금의 100분의 10 상당액
3) 월 접수요금 2,000만원까지	접수요금의 100분의 8 상당액
4) 월 접수요금 3,000만원까지	접수요금의 100분의 5 상당액
5) 월 접수요금 3,000만원초과	접수요금의 100분의 0.5 상당액
3. 우편요금 등 우편물의 접수	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
가. 우편요금 등 즉납우편물	우표류판매 할인율 적용 - 우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우편물 즉납액에 우표류 매수금액을 합산하여 할인율 적용 · 국내 : 일반(통상·소포), 등기통상우편물 · 국제 : 일반통상우편물
나. 별납 및 후납우편물	- 국내 : 통상(일반·등기), 일반소포우편물 - 국제 : 일반통상우편물
1) 월 접수요금 100만원까지	별후납 접수요금의 100분의 6 상당액
2) 월 접수요금 1,000만원까지	별후납 접수요금의 100분의 4 상당액
3) 월 접수요금 5,000만원까지	별후납 접수요금의 100분의 3.5 상당액
4) 월 접수요금 1억원까지	별후납 접수요금의 100분의 3 상당액
5) 월 접수요금 2억원까지	별후납 접수요금의 100분의 2.5 상당액
6) 월 접수요금 2억5천만원까지	별후납 접수요금의 100분의 2 상당액
7) 월 접수요금 3억원까지	별후납 접수요금의 100분의 1 상당액
8) 월 접수요금 3억원초과	별후납 접수요금의 100분의 0.5 상당액
다. 전자우편 1회 접수물량 1통 ~ 500통	우편요금의 3%(제작수수료 제외)
다. 전자우편 1회 접수물량 501통 ~ 1,000통	우편요금의 2%(제작수수료 제외)
다. 전자우편 1회 접수물량 1,001통 이상	우편요금의 1%(제작수수료 제외)

부 칙

1.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1-56호(2011.10.4.)와 제2012-23호(2012.5.30.) 고시는 폐지한다.